

현 행					개 정 (안)
<별 표>					<삭 제>
구 분	종 목	단위	금액	비 고	
2. 피임약 제 및 기 구보급	가. 피임약 제 (21정 또 는 28정 임)  나. 콘돔(6개 입)	1싸이클	23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직원 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먹는 피임약 330원, 콘돔 300원으로 하고 이중 100원은 실제보급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.</li> <li>• 자궁내장치 수수료증 1건당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임시술 사후관리비 (대한불임시술협회) : 1,000원</li> <li>-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 : 1,000원으로 한다</li> </ul> </li> </ul>	

## 철도변녹지시설지역시설변경에 대한 건의안

의안  
번호 287

제출년월일 : 1994. 12. 20.  
제 출 자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

### 1. 제안이유

영동포 618-111번지 일대 17.867m<sup>2</sup>(녹지조성 : 5.136m<sup>2</sup> 미보상 : 12.731m<sup>2</sup>)는 장기투자사업으로 소요예산이 200억이나 되나 '95년 5억 책정 등으로 볼 때 40년이 소요되는 바 본 사업책정은 불합리하므로 철도연변 시설녹지를 주차장시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함.

### 2. 주요골자

당초 본 사업은 시비보조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'95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자금 115억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철도연변 시설녹지를 주차장 시설로 변경하면 주차난 해소 및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음.

### 건의문

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'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 철도변녹지시설 예산안이 장기투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연 5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보상업무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서 당초 이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'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, 주차장시설자금이 115억이 확보되는 바 철도변 시설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함으로 철도변 토지보상도 일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확보도 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사업변경을 요청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.

1994. 12. 20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일동